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규정

제정 1997. 5. 31. 규칙 제1054호
개정 2001. 4. 6. 규칙 제1173호
2001. 5. 24. 규칙 제1189호
2002. 3. 21. 규칙 제1299호
2008. 2. 19. 규칙 제1662호
2010. 6. 30. 규칙 제1784호
2011. 9. 14. 규칙 제1837호
2013. 6. 12. 규칙 제1919호
2020. 4. 28. 규칙 제2233호
2024. 2. 29. 규칙 제249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및 산학협동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2.19., 2020.04.28.]

제2조(직무)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04.28.]

1.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신설 2020.04.28.]
2. 기초과학 분야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이와 관련된 활동 [신설 2020. 04. 28.]
3. 학술 및 교육 지원 활동[신설 2020.04.28.]
4. 그 밖에 기초과학 분야 연구에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신설 2020.04.28.]

제3조(원장 및 직무대행 등) ① 연구원의 원장은 자연과학대학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2020.04.28.]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0.04.28.]

③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8.2.19., 2020.04.28.]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리고 부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조직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0.04.28.]

제4조(조직 등) ① 연구원에 분자과학연구소, 지질환경연구소, 기후·대기환경연구소, 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 핵·입자천체물리연구소, 과학기술과미래연구센터, 천문우주연구센터, 연구지원실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0.6.30., 2011.9.14., 2013.6.12., 2020.4.28., 2020.9.11., 2024.02.29.]

② 각 연구소, 센터 및 실에 장을 두며, 각 장은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02.19., 2020.04.28., 2024.02.29.]

③ 각 연구소, 센터 및 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04.28.]

1. 분자과학연구소: 분자 구조, 유기 합성, 생체 분자 모방, 무기 재료 및 기기 분석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0.04.28., 2020.09.11., 2024.02.29.]
2. 지질환경연구소: 지질 및 자원 탐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0.04.28., 2020.09.11., 2024.02.29.]
3. 기후·대기환경연구소: 각종 규모의 대기의 순환, 기후변화, 기상현상, 대기환경 등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미래 예측 및 영향 진단에 관한 사항[개정 2020.04.28., 2020.09.11., 2024.02.29.]
4. 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 진핵 세포의 분화, 발생 및 유전 등의 조절기작에 관한 사항[개정 2020.04.28., 2020.9.11., 2024.02.29.]
5. 핵·입자천체물리연구소: 핵, 입자 및 천체와의 융합분야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0.04.28., 2020.09.11., 2024.02.29.]
6. 과학기술과미래연구센터: 과학기술학의 관점에서 미래에 대한 연구, 미래 전략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0.04.28., 2020.09.11., 2024.02.29.]
7. 천문우주연구센터: 국가 우주 개발계획을 뒷받침할 우주 연구인력 양성 및 과학적 임무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9.11., 2024.02.29.]
8. 연구지원실: 기초과학육성, 학제간 공동연구 및 특정연구 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6.30., 2020.09.11., 2024.02.29.]
9. 행정실: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연구비관리, 통관서비스 및 그 밖의 행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0.06.30., 2020.04.28., 2020.09.11., 2024.02.29.]

④ [삭제 2020.04.28.]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02.19., 2020.04.28.]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8.02.19., 2011.09.14., 2020.04.28.]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

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02.19., 2020.04.28.]

④ [삭제 2008.02.19.]

⑤ 보조연구원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8.02.19., 2020.04.28.]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04.2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8.02.19., 2020.04.28.]

1.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신설 2020.04.28.]

2. 부원장, 각 연구소장과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신설 2020.04.28.]

3.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20.04.28.]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신설 2020.04.28.]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0.04.28.] [개정 2020.09.11.]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04.28.]

1. 기본 운영 계획과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

4.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금 조성 및 관리

6. 연구원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개정 2024.02.29.]

7.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2020.04.2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02.29.]

제7조(자문위원)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4.02.29.]

제8조(운영세칙)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 04. 28., 2024.02.29.]

부 칙 (제118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9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66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7호, 2024.2.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생물다양성연구소 규정

제정 1990.11.20. 규칙 제 816호
개정 1998.08.31. 규칙 제1099호
2002.02.26. 규칙 제1266호
2024.02.29. 규칙 제2498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존과 연구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생물다양성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2.29.]

제2조 (직무) 서울대학교 생물다양성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02.29.]

1. 생물다양성 분야의 연구와 인력 양성 [개정 2024.02.29.]
2. 국내외 생물다양성 분야 연구자들과의 연구 교류와 학술 활동[개정 2024.02.29.]
3. 대학·연구기관·산업체 간의 협력, 공동연구의 추진
4. 기타 관련 연구자에 대한 행정 및 기술 편의 제공

제3조 (소장 및 직무대행 등) ① 연구소의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4.02.29.]

② 소장은 자연과학대학장 또는 관련 학과(부)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연과학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자연과학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4.02.29.]

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④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조직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4.02.29.]

제4조 (조직 등) ① 연구소에 생물다양성센터, 유전체센터, 생물정보학센터, 분자미생물연구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개정 2024.02.29.]

② 각 센터에 장을 두며, 각 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24.02.29.]

③ 각 센터 및 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1. 생물다양성센터: 미생물 및 동·식물 유전자의 탐색, 수집, 보존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4.02.29.]

2. 유전체센터: 미생물 및 동·식물들의 유전체 및 단백질체의 정보를 구축하고

그 기능을 규명하는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4.02.29.]

3. 생물정보학센터: 미생물 및 동·식물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4.02.29.]

4. 분자미생물연구센터: 미생물의 생명현상에 관한 특정목적연구에 관한 사항

5. 행정실: 서무·회계·보안·관인관수·연구비 관리 및 그 밖에 행정사항

제5조 (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02.29.]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4.02.29.]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연수연구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에 각각 따른다.[개정 2024.02.29.]

④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개정 2024.02.29.]

2. 생물다양성센터장, 유전체센터장, 생물정보학센터장, 분자미생물연구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4.02.29.]

3.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02.2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4.02.2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4.02.29.]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

2.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3. 연구원 등의 인사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5.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02.29.]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02.29.]

⑦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4.02.29.]

제7조 (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02.29.]

제8조 (운영세칙)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81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9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66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498호, 2024.02.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수학연구소 규정

제정 1990. 1. 5 규칙 제 781호
개정 2002. 2. 26 규칙 제1270호
2004. 6. 30 규칙 제1447호
2005. 8. 23 규칙 제1500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수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학분야의 연구
2. 수학에 관한 국내외 연구협력 및 지원

제 3 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학부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교수 이상 전임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4. 6. 30>

제 4 조 (조직 및 직무대행) ①연구소에 순수수학연구부, 응용수학연구부, 고등수학교육센터, 정보보호 및 암호연구센터, 전산실, 자료실과 행정실을 둔다.

②각 부, 센터 및 실에 각각 부장, 센터장 및 실장을 두며, 각 부장과 센터장 및 실장(행정실장은 제외한다)은 전임교수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각 부, 센터 및 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순수수학연구부는 순수수학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2. 응용수학연구부는 응용수학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3. 고등수학교육센터는 고등수학교육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 및 암호연구센터는 정보보호 암호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5. 전산실은 연구자료의 전산화 및 정보교류,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6. 자료실은 연구성과와 연구자료의 축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실은 보안, 관인관수, 서무·회계 및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

④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선임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5. 8. 23]

제 5 조 (연구원 등) ①연구소에 겸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하고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연구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구원의 인건비 등은 본 연구소 자체재원으로 충당한다.

④객원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연구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⑤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 6 조 (운영위원회) ①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폐기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조 (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본교 전임교수 및 산업체 등의 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4. 6. 30>

제 8 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781호)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7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44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0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규정

제정 1984. 3. 5 규칙 제 624호
개정 1990. 5. 4 규칙 제 806호
1992. 3. 18 규칙 제 861호
1993. 12. 10 규칙 제 920호
1995. 10. 30 규칙 제 984호
1997. 2. 25 규칙 제1041호
2001. 5. 24 규칙 제1188호
2002. 2. 26 규칙 제1276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서울대학교유전공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전공학 관련 학문분야(이하 “유전공학”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2. 유전공학 관련 협동과정과의 연계로 유전공학고급인력 양성
3. 국가적인 특정과제의 학술연구
4. 유전공학 관련 기관과의 연계로 공동연구, 이론과 기술지도 및 연수

제 3 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주관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제 4 조 (조직 및 직무대행) ①연구소에 연구부, 기획부, 공동기기부, 학술부, 유전공학특화창업보육센터 및 행정실을 두고, 연구부에는 분야별 연구실을 둘 수 있다.

②각 부 및 센터(행정실)에는 부장 또는 센터장(실장)을 두며, 겸임연구원(행정실장 제외)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각 부 및 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부는 유전공학의 기초 및 응용연구
2. 기획부는 연구소 운영 관련 기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국가특정연구 기획
3. 공동기기부는 연구소 기기 및 시설의 관리
4. 학술부는 학술기획, 자료관리, 유전공학관련 협동과정 교육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유전공학 특화 창업 보육센터는 생명과학 관련 연구 결과의 산업화 유도, 창업지원, 예비창업과 벤처회사의 입주와 이에 따르는 각종 기술 및 서비스 제공, 산·학협동연구장려, 학제간침단체단연구 수행
6. 행정실은 연구소의 운영, 연구비관리, 시설관리 등 제반 사항을 행정 지원한다.

④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연구부, 기획부, 공동기기부, 학술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5 조 (연구원 등) ①연구소에 겸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 ③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하고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연구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구원의 인건비 등은 본 연구소 자체재원으로 충당한다.
- ④객원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연구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 ⑤보조연구원은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을 보조하며,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명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 6 조 (운영위원회) ①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관계공무원, 유전공학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 ③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 8 조 (공개강좌)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학칙에 의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 9 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62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0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6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92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8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4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8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76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대학교 이론물리학연구소 규정

제정 1990. 1. 5. 규칙 제782호

개정 1998. 8. 31. 규칙 제1098호

2002. 2. 26. 규칙 제1278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서울대학교이론물리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론물리학에 관한 연구 및 협동 연구 지원
2. 국내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3. 이론물리학 연구센터의 운영

제 3 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관련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 4 조 (조직 및 직무대행) ①연구소에 연구부, 연구지원부, 특수사업부를 두며, 연구부에는 입자물리실, 양자장론 및 통일장론실, 핵물리실, 응집물질물리실, 통계물리실을 둔다.

②각 부와 실에 부장 및 실장을 두며, 각 부장 및 실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③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부는 입자물리, 양자장론 및 통일장론, 핵물리, 응집물질물리, 통계물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지원부는 도서 및 자료관리, 시설, 기자재관리, 학술행사,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수사업부는 이론물리학 연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④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연구부장, 입자물리실장, 양자장론 및 통일장론실장, 핵물리실장, 응집물질물리실장, 통계물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연구원 등) ①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연구원, 객원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하고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연구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구원의 인건비 등은 본 연구소 자체재원으로 충당한다.

④객원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연구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⑤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자격으로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 6 조 (운영위원회) ①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규정 및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의 건의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조직, 운영 체계 및 기본사업 계획 수립
3. 연구소의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과제 선정
4. 연구원의 추천 및 인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조 (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 8 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782호)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9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7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규정

제정 1986. 12. 24. 규칙 제691호
전문개정 1992. 7. 15. 규칙 제885호
개정 2002. 2. 26. 규칙 제1291호
개정 2007. 8. 6. 규칙 제1613호
개정 2014. 1. 3. 규칙 제1934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의 기초 연구와 해양 환경 및 자원조사, 개발을 통해 해양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해양의 제 현상에 관한 이론적 기초 연구
2.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에 관한 조사·개발 연구
3. 해양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류
4. 해양학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해양정책 최고과정) 및 교육훈련(여름바다학교)

제 3 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지구환경과학부장이 겸무함을 원칙으로 하여,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자연과학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 4 조 (조직) ① 연구소에 동해순환연구센터, 연안재해방제연구센터, 독도·울릉도 해역연구센터, 해양생태·생명공학연구센터, 대양·자원탐사연구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② 각 센터에 분야별로 실을 둘 수 있고, 각 센터와 실에 센터장 및 실장을 두며, 각 센터장 및 실장(행정실장은 제외한다)은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센터와 행정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1. 동해순환연구센터는 동해의 해수와 물질순환의 이해, 다양한 시간변동 요인 규명과 미래환경 예측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해양학의 해군작전 응용 및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해양학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안재해방제연구센터는 해일, 오염물질 확산 등 연안재해현상을 관측·분석·예측하여 예방하는 연구에 관한 사항

3. 독도·울릉도해역연구센터는 독도 및 울릉도 해양생태환경 연구 및 자료축적에 관한 사항

4. 해양생태·생명공학연구센터는 해양생태 환경연구 및 MBT기술개발, 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5. 대양·자원탐사연구센터는 국내 대양 연구기반 조성,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초 정보와 기술 제공, 새로운 탐사장비 및 관측개발에 관한 사항

6. 행정실은 서무, 회계, 연구비 관리, 연구소 운영 및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

④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자연과학대학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④ 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 6 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해양 및 이와 관련된 연구에 종사하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기술직 공무원, 연구기관 및 관련 산업체의 임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결산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조 (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 8 조 (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69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88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29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613호, 2007. 8.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34호, 2014. 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응용물리연구소 규정

제정 2013. 6. 12. 규칙 제191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재·소자 물리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 및 응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응용물리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서울대학교 응용물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응용물리 관련 학문분야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2. 응용물리 분야 협력연구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제공
3. 응용물리 관련 산학연 다학제간 공동연구 개발
4. 고급 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결과의 보급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자연과학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운영부와 대외협력부, 공동기기센터, 그래핀·나노소재연구단, 차세대양자 소자연구단 및 광·디스플레이연구단을 둔다.

② 각 부, 센터 및 연구단에는 각각 부장, 센터장 및 단장을 두며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 센터 및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부는 구매대행, 장비 및 시설관리, 공간 및 인력 관리와 연구계약, 연구비 관리 및 집행
2. 대외협력부는 연구기획 및 산학연 연구지원 업무
3. 공동기기센터는 공동실험장비 및 분석기기의 설치 및 운영, 기술정보제공
4. 그래핀·나노소재연구단은 그래핀에 관련한 제반 연구 및 다학제간 산학과제 연구 수행과 교육체계 확립에 대한 사항
5. 차세대양자소자연구단은 다양한 차세대 메모리 및 반도체 소자에 관련한 제반 연구와, 다학제간 산학과제 연구 수행 및 교육체계 확립에 대한 사항
6. 광·디스플레이연구단은 광전자에 관련한 제반 연구 및 다학제간 산학과제 연구 수행과 교육체계 확립에 대한 사항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및 기금교원 중에서 소속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④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운영부장, 대외협력부장, 공동기기센터장, 각 연구 단장으로 한다.

3. 자연과학대학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4. 소장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밖의 위원을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③ 임명·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2. 연구소의 제반 규정 제정 및 폐기

3. 연구소의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4. 연구소 내 연구단의 신설, 폐지 및 변경

5.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연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위촉하고,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1917호, 2013. 6.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과학데이터혁신연구소 규정

제정 2024. 3.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데이터과학 연구와 데이터 디스커버리를 통한 자연과학 혁신 연구를 목표로 자연과학 분야의 다양한 학과·전공의 연구인력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과학데이터혁신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서울대학교 과학데이터혁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도적 기초과학 데이터과학/AI 기술 도입
2. 학제간 연구강화 전략
3. 산학협력 및 전주기적 인력양성 추진
4. 연구방법론 관련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관련 연구자에 대한 행정 및 기술 편의 제공

제3조(소장 및 직무대행 등) ① 연구소의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연과학대학장 또는 관련 학과(부)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장은 연구를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조직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중점테마연구부, 통계데이터과학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각 부에 장을 두며, 각 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 및 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1. 중점테마연구부: 기초과학의 데이터 기반 혁신 연구
2. 통계데이터과학부: 데이터과학·통계방법론 연구, 상담 및 자문, 공개강좌, 대중화 역할
3. 행정실: 보안, 서무, 회계 및 그 밖에 행정에 관한 사항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연수연구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에 각각 따른다.

④ 보조연구원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2. 각 부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2.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3. 연구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5.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2514호, 2024. 3.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과학대학 연구소 설치기준의 세칙

개정 2000. 3. 10

제 1 조 (목적) 자연과학대학 내의 부설연구소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소의 목적) (연구소는 아래 설립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자연과학대학 부설로 설치되는 연구소는 서울대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설연구소는 변화하는 연구환경속에서 자연과학의 기초연구의 심화를 이루도록 조직화되어야 하고, 연구의 결과들은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 조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 (연구소 설치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이 타당해야 한다.)

연구소는 학부(과)나 기초과학연구원과 같은 기존의 연구체제에 의해서 연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없음이 명확할 때 신설될 수 있다. 특히 학부(과)와 부설연구소간의 체제 및 기능상의 차이점이나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기존 연구체제의 비효율성이 분명해야만 한다. 가능한 한 학부(과)간의 교류에 의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어야 한다.

제 4 조 (연구소의 재정) 부설연구소는 독립적인 재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소의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 5 조 (연구소의 사업) 부설연구소는 연구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 연구의 계획

독자적인 연구과제의 개발

공동연구의 계획

나. 연구 지원

연구재원의 확보와 연구원에 대한 재정지원

행정지원

연구관계 자료실 운영

연구 기기의 운영

다. 연구의 관리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비의 관리

연구결과의 평가

라. 연구의 홍보

간행물 발간

연구발표회 개최

제 6 조 (연구소의 평가 및 폐기) 연구소의 사업에 관하여 매년 연말 실적보고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자연과학대학은 각 부설연구소의 사업을 4년마다 평가하여 연구소가 그 임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기시킬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